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원칙》과 그 기만성

신 광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며 그들이 들고나오는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것들은 모두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김일성전집》 제65권 406폐지)

부르죠아지들은 자본주의형사재판에 대한 환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심증원 칙》을 내세우고 그것을 판사와 배심원의 《내부적확신》에 기초한 《객관적진실을 발견》하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떠들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원칙》은 형사재판을 통하여 광범한 근로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고 착취제도와 극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보호하기 위 한 하나의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죠아지들이 떠드는 형사재판에서의 《자유심증원칙》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판사나 배심원의 자유로운 평가에 맡긴다는것이다. 즉 증거의 증명력을 법에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판사와 배심원의 자유로운 평가에 맡김으로써 《객관적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는것이다.

현재 자본주의형사재판에 도입되고있는 《자유심증원칙》은 재판심리에서 범죄자와 그의 범죄를 증명하는 각종 증거자료의 진실성여부는 판사의 《내부적확신》에 기초해야 한다는것으로서 자본주의재판제도가 확립된 이후 지금까지 형사재판에 적용되고있다.

부르죠아지들은 《자유심증원칙》에서 재판이 마치도 그 무슨 판사와 배심원의 《정의》 와 《량심》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자본주의형사재 판의 계급적성격을 은폐하려는 한갖 허구에 불과한것이다.

부르죠아지들은 자본주의형사재판제도의 계급적본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판에서 판사와 배심원의 자유로운 심증을 초계급적인 심증으로 묘사하고있다. 즉 재판진행에 대한 판사와 배심원의 심증은 그 어떠한 외부적영향도 배제하고 계급적리해관계도 초월한 《제3자의 립장》에서 가지게 되는 심증이라는것이다. 이로부터 부르죠아지들이 떠드는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원칙》의 기만성을 폭로비판하는것은 사람들에게 자본주의형사재판의 반동적정체를 똑바로 알고 그와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계급의식을 높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원칙》은 봉건사회말기에 부르죠아지들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나왔다.

봉건사회말기에 이르러 봉건적인 착취와 억압이 강화됨에 따라 봉건지배계급의 로괄적이며 전제적인 탄압은 재판분야에서도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 재판에서는 《법정증거원칙》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이 미리 법에 규정되여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사정의 진실

성여부가 결정되였으므로 사건에 대한 평가에서 판사의 재량이 조금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정증거원칙》에서 판사는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수밖에 없었고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고 판단할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 이것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물론 봉건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흥부르죠아지들에게도 커다란 위협으로 되였다.

이로부터 신흥부르죠아지들과 그 대변자들은 봉건사회의 규문주의적악법을 반대하고 봉건적재판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게 되였으며 그 일환의 표현으로서 부르죠아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심증원칙》을 들고나왔다.

《자유심증원칙》을 처음으로 들고나온것은 18세기 프랑스의 법학자 두뽀르였다. 그는 프랑스 헌법제정회의에 재판개혁과 관련한 보고서초안을 제출하였다. 보고서에서 그는 《자유심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봉건사회형사재판에서 적용되고있는 증거의 수집과 평가방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자기의 주장에서 봉건사회형사재판에서와 같이 증거의 증명력을 법에 미리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판사가 사건을 취급처리하게 한다면 사건에 대한 옳은 평가를 내릴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증거수집과 평가에서 판사에게 자그마한 재량의 여지도 주지 않고 다만 이러저러한 사실을 승인 또는 거부할 의무만을 지우는 《법정증거원칙》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표상을 가질수 없게 하고 나아가서 사람들의 인신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응당 폐지되여야 하며 판사는 자기의 《내부적확신》 즉 《자유심증원칙》에 의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이렇게 해야 재판에서 《법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인간의 인신에 대한 존중》의 요구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당시의 조건으로 볼 때 혁신적인것으로 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재판에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것은 결코 아니였다. 재판에서 판사의 《초계급적》인 립장에 선 《내부적확신》에 기초한 《자유로운 심증》은 근로인민대중을 저들의 정권을 잡기 위한데 리용하기 위한 기만적이고 허위적인것이였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해당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적인 활동 인것만큼 사건을 해결하는 판사와 배심원은 응당 지배계급의 의사를 따르게 된다. 다시말 하여 재판에서 판사와 배심원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지배계급의 리익실현에만 지향되게 된다. 지배계급의 리익실현을 떠난 그 어떠한 재판활동이란 있을수 없다.

결국 두뽀르의 주장은 부르죠아지들의 대변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있지도 않는 《초계급성》이라는 말로써 근로인민대중의 환심을 얻어 그들의 투쟁의 대가로 봉건적인 재판제도를 타파하고 부르죠아적인 재판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을 변호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죠아대변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심증원칙》은 부르죠아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였으며 그것은 프랑스에서 부르죠아혁명이후 재판진행의 기본방식으로 인정되였고 이것 은 1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전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나라들에도 파급되였다.

프랑스의 1808년 《형사소송법전》에서는 판사와 배심원의 《내심확신》을 규정하였다. 그후 프랑스는 현재까지 《형사소송법전》을 여러차례 수정하면서도 판사와 배심원의 《내 심확신원칙》 즉 《자유심증원칙》의 내용을 《형사소송법전》에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프랑스의 현행《형사소송법전》제353조에서는 판사의 자유로운 확신에 지장을 주는

그 어떤 외부적영향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있다. 그러므로 판사는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사고하여 모든 유죄증거와 변호리유를 연구하여 자기의 리지적인 두뇌에 기초하여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프랑스《형사소송법전》제427조에서는 법률이 따로 가지는 규정을 제외하고 범죄는 임의의 형식으로 인정할수 있으며 판사는 자기의 《내심확신》에 의거하여 유죄와 무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도이췰란드는 19세기에 재판에서 배심법정을 내오면서 《자유증거평가원칙》 즉 《자유 심증원칙》을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으로 적용하였다.

도이췰란드의 현행《형사소송법전》제261조에서는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법정은 심리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확신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일본은 현행《형사소송법전》제318조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결정》 즉 《자유심증원칙》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영미법계나라들에서는 비록 《자유심증원칙》을 법에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 원칙을 재 판실천에서 《증거적용원칙》에 적용하고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영미법계나라들의 형사재판에서도 《자유심증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자유심증원칙》은 발생초기부터 부르죠아지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실현에 이바지하는 부르죠아적인 재판제도의 수립을 목적으로 나왔으며 현재에도 반동적인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리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기만적인 원칙에 불과하다.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원칙》의 기만성은 첫째로, 그것이 행정부에 전적으로 종속된 재판소들의 실제적인 현실을 외곡하고있다는데 있다.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는 《자유심증원칙》을 봉건국가의 《법정증거원칙》을 반대하여 제기하면서 마치도 재판에서 《공정한 립장》을 지키는 판사와 배심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기초하여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조사심리되고 그에 기초하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것이다. 즉 재판진행에 대한 판사와 배심원의 심증은 그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배제하고 계급적리해관계도 초월한 《제3자의 립장》에서 가지게 되는 심증이라는것이다. 이것을 리론적으로 안받침하여주는것이 오늘 부르죠아반동들이 제창하는 《3권분립론》이다.

자본주의국가들의 헌법은《3권분립》에 기초하여《재판소의 독립》을 규정하고있다.

부르죠아지들은 저들의 이와 같은 허구적인 《헌법》규정들을 인용하면서 《3권》의 하나인 사법권을 틀어쥐고있는 재판기관이 그 어떤 개인이나 그루빠의 영향도 배제하고 재판의 《민주주의》를 보장한다고 력설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계급사회에서 재판소는 국가주권을 쥔 지배계급이 저들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권력기구의 하나이다. 때문에 재판소의 모든 활동은 국가주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만을 반영하게 되며 그 실현에 지향되게 된다.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떠난 초계급적인 재판소란 존재할수도 없으며 또 그러한 재판활동이란 있어본적도 있을수도 없는것이다.

《3권분립》에 기초한 사법권의 《정부로부터의 독립》, 《재판소의 독립》 등은 부르죠아지들이 부르죠아재판소의 계급적성격을 은폐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판기관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것이 아니라 정부에 철저히 종속된 권력기관이므로 판사와 배심원의 《자유심증》은 정부의 반동적인 정책실현에 지향 된것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판기관이 정부에 철저히 종속된 권력기관으로 되여있는것은 우선 그것이 정부와 의회에 의하여 조직되는데서 표현된다.

오늘 대부분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판기관의 판사들은 선거되는것이 아니라 대통 령과 의회에 의하여 임명되고있다.

력사적으로 볼 때 판사의 임명방식은 국가형성과 함께 나왔으며 왕이나 군주의 독재 정치가 로골화되고 절대적이였던 노예사회나 봉건사회에 존재하였다.

고대 및 중세시기 일체 권력은 군주 한사람에게 집중되여있었으므로 군주는 립법, 행정, 사법의 모든 분야에서 무제한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군주는 최고재판권을 자기가 직접 행사하거나 착취계급에게 충실한자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노예사회나 봉건사회시기 존재하였던 재판관임명제는 근대를 걸쳐 현대에 이르는 오 늘까지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그대로 답습되고있다.

미국에서는 련방최고재판소 판사들은 비록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는 하지만 이것은 한갖 겉치레에 불과한것이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실례로 미국에서 련방판사는 반드시 변호사자격과 변호사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상원의 동의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련방판사는 종신직으로서 법에 규정된 리유없이 조동, 해임시킬수 없다.

정부의 직접적인 권한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소의 판사들은 정부의 정책실현에 철저히 복종하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여기고있다.

이렇게 판사들이 대통령이나 왕에 의하여 임명되는가 하면 프랑스,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판사를 선거하고있다.

이러한 선거제는 이러저러한 제한 및 보류조건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대표적으로 선거전에 출마하여 판사로 선거되자면 많은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재산의 소유정도에 따라 판사로 선거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는것은 사람의 인격적가치를 오직 돈과 재부에 따라 저울질하는 부패한 자본주의사회의 일단을 보여주 는것이다.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 판사직을 차지하고있는자들은 례외없이 많은 돈과 재부를 틀어쥐고있는 대독점부르죠아지들이 아니면 그들에게 아부하여 그들로부터 막강한 재정적, 물질적후원을 받고있는자들이라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배심원은 퇴직관료들이나 재산이 중산층의 수준에 있는자들, 그리고 정부에 아부하는자들이다. 배심원은 소위 중앙이나 지방정부들에서 선거하여 선발한다고는 하지만 이들도 판사들과 같이 반동적인 자본주의국가와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할수 있는자들로 구성한다.

실례로 미국에서 배심원으로 되자면 나이가 18살이상이고 영어회화를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상이 건전》한 미국공민이여야 하며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상이 건전》하다는것은 미국의 반동적인 정책과 그 집행에 앞장서야 한다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판사와 배심원들은 반동적인 정부와 의회에 의하여 선발되고 임명 되는자들로서 이들이 그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고 재판심리에서 《공정한 립장》을 지킨다 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판기관이 정부에 철저히 종속된 권력기관으로 되여있는것은 또 한 정부의 통제속에서 재판활동이 진행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이행하면서 국가권력을 독점한 대독점부르죠아지들을 비롯한 반동적인 지배계급은 저들의 요구와 리익을 권력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입버릇처럼 외 우던 《재판소독립원칙》도 완전히 줴버리고 정부가 재판활동에 적극 관여할수 있게 하는 통치체계를 확립하고 권력실현의 주도적인 기관으로서의 정부의 권한의 범위를 확대하 였다.

특히 정부가 재판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수 있도록 정부안에 사법행정부서를 내 오고 그것을 통해 재판기관의 활동을 통제할수 있는 체계를 세워놓았다.

실례로 프랑스, 도이췰란드, 일본 등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판소는 사법부와 법무 대신의 통제속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익실현의 합법적전제와 조건, 담보를 마련해주는 재판기관의활동은 정부의 활동을 보다 손쉽게 해주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이것은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 재판기관은 정부의 정책실현에 전적으로 복무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기관이며 판사는 대독점부르죠아지들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자유로운 심증이라는것은 그 어떠한 초계급적인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부와 착취계급의 직접적인 통제와 간섭밑에서 얻게 되는 《자유심증》에 기초한 판사와 배심원들의 《정의》와 《량심》인것이다.

제반사실은 《자유심증원칙》에서의 초계급적인 《정의》, 《량심》은 있을수도 없는 허황 한것들로서 이것은 자본주의형사재판의 계급성을 부인해보려는 기만적인것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반동들은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원칙》을 통하여 제아무리 자본주의형사재 판의 계급적본질을 은폐하려고 잔꾀를 부려도 결코 그것은 변할수도 없어질수도 없다.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원칙》의 기만성은 둘째로, 그것이 불공정한 자본주의 형사재판의 실제한 현실을 《민주주의》가 보장된 재판으로 표방하고있다는데 있다.

부르죠아 《자유심증원칙》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판사와 배심원의 《내부적확신》은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사실에 철저한 구속을 받는다. 다시말하여 사건해결에 필요한 모든 증거들에 대한 판사와 배심원의 평가는 당사자들의 주장의 범위안에서만 내려지게 되여있다.

판사와 배심원이 당사자들의 주장범위안에서만 확신을 가지게 되여있는것은 특히 형 사재판에서 찾아볼수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우선 판사와 배심원은 당사자가 자백한 경우 그것을 절대적인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조사를 더하지 않고있는데 있다.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들의 자백은 본원적이며 직접증거로서 사건해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판소는 증거의 한 종류인 당사자들의 자백을 매우 중시해야 하며 여기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여러 측면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들의 자백이라도 철저히 조사검 토된 다음에야 해당 사건해결의 증거로 리용하여야 한다. 그것은 당사자들의 자백도 간혹 그 어떤 부정적요인에 의하여 객관적사실과 전혀 맞지 않게 과장날조될수 있기때문이다.

만일 판사와 배심원이 당사자들의 자백에 대하여 아무려한 조사검토도 없이 무턱대고 진실한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사건해결에서 흑백이 완전히 전도될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오늘 미국, 영국을 비롯한 영미법계자본주의나라들의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에게 변론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판사의 확신을 당사자의 자백내용에 국한시키고있다. 그것은 피고인의 유죄자백을 《증거의 왕》으로 보고 더이상 다른 증거의 조사검토와 재판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즉시 판결을 내리기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당사자들의 자백에 대한 판사와 배심원의 무관심한 태도로 하여 온갖 부정협잡행위가 성행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협잡과 회유, 강박에 못이겨 본의 아닌 허 위자백을 하는 현상이 보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형사재판에서는 또한 판사와 배심원이 검사의 기소장에 반영된 내용을 절대적인것으로 인정하고있는데 있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단계에서 조사한 범죄와 범죄사실에 기초하여 과학적이며 객관적 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수사에서 수사원의 잘못으로 하여 사건과 맞지 않게 범죄가 조사되거나 그에 따르는 증거도 잘못 수집한 경우 그것을 절대적인것으로 믿고 기소한다면 기소의 과학성을 보장 할수 없게 된다. 때문에 재판소는 사건이 일단 재판소에 기소된 다음에는 그의 진실성을 철저히 심리검토한 다음에 법적요구와 자기의 확신에 기초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의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재판소에 기소한 기소장에 철저히 근거하여 재판을 진행하므로 기소장의 범위를 벗어나 사건을 조사심리할수 없다.

특히 미국, 영국을 비롯한 영미법계형사소송을 적용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할 때 기소장외에 그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으므로 재판소가 사건심리에서 책임성을 더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형사재판에서 판사와 배심원들은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과 《유 죄답변흥정》거래를 통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기소장을 절대적인것으로 인정하므로 재판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즉시 판결을 내리고있다.

《유죄답변흥정》은 실제적으로 볼 때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온갖 모순과 대립이 격화된 사회로서 오직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라 면 남을 희생시키는것과 같은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할뿐이다. 때문에 《유죄답변》은 철저히 소송당사자들의 평등의 관계에서 맺어지는것이 아니라 회유와 기만에 의하여 이 루어진다.

결국 피고인의《유죄답변》은 검사의 회유와 기만,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판사와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죄답변》에 대한 정당성여부도 심사하지 않고 그것을 진실한 의사에 기초한 증거의 왕으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것은 반동적인 착취계급 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복무하는 검사의 기소에서 강권과 전횡을 부릴수 있는 공간을 지 어줄뿐이다.

오늘 대다수 자본주의나라들의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의 소송상권리실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명아래 당사자들의 주장이 절대화되며 판사와 배심원이 여기에 맹종맹동함 으로써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무시되고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원칙》은 그 발생자체가 봉건적인 재판제도를 타파하고 부르죠아지들이 저들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제도를 확립하려는 요구를 반영하여나왔으며 그것이 확립된 후에는 그의 계급적본질을 은폐하고 그 적용의 불 공정한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형사재판원칙이다.

우리는 부르죠아지들이 들고나오는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원칙》의 기만성을 똑바로 알고 그와의 투쟁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재판제도의 우월성을 고수하 고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자본주의형사재판,《자유심증원칙》